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 31 선고 2018가단50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20나45834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 31 선고 2018가단5049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전영빈

피 고 B

소송대리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윤규원, 조성제, 조현정

변론 종결 2019. 12. 6.

판결 선고 2020. 1. 31.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1. 체결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21,612,92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612,92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6. 12. 21.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31,346,623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346,623원과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계부품 및 제작, 조립금속제품 도매업을 하면서, D에게 기계부품을 공급하는 등으로 거래를 하여 왔다. 그러던 중 D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채무가 81,939,000원에 이르게 되어,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2013차1548호로 D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받았다.

나. D의 아버지인 망 E은 2016. 12. 2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 F, 자녀인 D,피고, C이 있다. 망 E의 상속인들은 2016. 12. 21.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 (아래에서는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2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당시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망 E이 채무자인 주식회사 G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82,500,000원, 대출액은 7,500만 원,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대출잔액 7,500만 원, 2018. 11. 5. 기준 대출잔액은 72,198,195원, 이자는 연 3.85%)이 설정되어 있고, 이 사건 분할협의 및 그에 따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인 2017. 11. 17. 채무자가 피고인 H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000만 원, 2018. 11.경 기준 원금 잔액26,023,338원)이 설정되었다.

망 E은 2016. 5.경 I와 이 사건 부동산의 1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I는 2016. 6. 1. 망 E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6. 3.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2016. 7. 4. 임대차계약에 관한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2016. 9. 27.경 시가감정평가액은 222,258,1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3호증의 2, 을 제14호증, 을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등 참조).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참조).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2) 판단

가)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J의 상속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피고, D을 비롯한 3인의 자녀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은 2/9 상당이다.

나아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D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D을 비롯한 상속인들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D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 2/9 지분을 포기하고 그 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행위는 D의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D이 망 E 생전에 부산 북구 K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매수자금 95,049,880원, 대출금 대위변제의 방법으로 5,000,000원을 증여받아, 생전증여로 100,049,880원을 받았고, 이 생전증여를 고려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면 D의 생전증여액에 미치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②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D은 상속을 포기하는 대신 8,000만 원을 받기로 하여 아들 L 명의 계좌로 매달 일정금액을 수령하여 2018. 7.까지 합계 99,87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D으로 하여금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게 하였으므로 D의 구체적인 상속분 중 채무를 면하는 이익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특별수익으로서의 생전 증여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12호증, 을 제15호증 내지 을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생전 증여와 그로 인한 D의 특별수익에 관한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분할협약에 대한 대가지급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분할협약이 D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이상, 분할협약에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해행위 성립이 부정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면책적 채무인수와 관련된 공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면책적으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전채무의 경우 상속이 개시됨과 동시에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이후 상속채무를 상속인 중 한 명이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체적인 상속분에 고려할것은 아니고, 재산분할에 따른 대가 지급과 마찬가지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여 사해행위 성립이 부정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

D은 이 사건 분할협약으로써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을 처분하였으므로 D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이고, D의 동생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의 분할협약 대가 지급이나 채무인수 주장을 선의 주장으로 선행하여 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반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악의 추정을 반복할 만한 사정이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1)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로되었다면 후일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위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할협의 후 피고가 채무자인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있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하여 공동담보로 제공되었던 가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의 구체적인 범위

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고, 사해행위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부동산 가액 중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익자가 반환할 부동산 가액에서 우선변제권있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부동산의 2016년경 시가감정평가액이 222,258,16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그 이후 변론종결 무렵까지 변동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2016년 시가감정평가액을 변론종결 무렵의 이 사건 부동산 시가 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7,500만 원,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5,000만 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D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 상속분 중 일반채권자를 위하여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부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2/9에 해당하는 21,612,924원[97,258,160원(222,258,160원 - 75,000,000원 - 50,000,000원)×2/9, 원 미만 버림] 상당이다.

다) 이 사건 분할협의를 위 21,612,92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21,612,92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이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현의선

부동산의 표시

1. 부산광역시 북구
대 165㎡

2. 위 지상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조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85.72㎡

2층 78.6㎡

(소외 지분에 대하여)

- - - 이 상 - - -